

시행 2015. 01.

2015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지침

2015. 01.

< 목 차 >

I. 총 칙	1
II. 운영기관 자격 및 위탁운영약정 체결	4
III. 실시기업 및 인턴 참여자 자격	8
IV. 인턴 모집, 선발 및 협약 체결	12
V. 인턴약정(실시기업-인턴) 체결 및 인턴 관리	18
VI. 정규직 전환	22
VII. 정부 지원금 지급	23
VIII. 정부 지원금 관리	29
IX. 사후 관리	34
X. 시행일 및 경과규정	38
<첨부1> 중소기업과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39
<첨부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40
<첨부3> 운영기관 평가기준	42
<첨부4> 벤처지원업종	43
<첨부5> 지식서비스산업	44
<첨부6> 문화콘텐츠산업	45

I | 총 칙

1. 목 적

-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센터·위탁운영기관·인턴실시기업·청년인턴이 제도 운영에 있어 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법적근거 및 사업취지

- 이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 청년 미취업자에게 ①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②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고취하며, ③ 적성·경험에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한다.

3. 용어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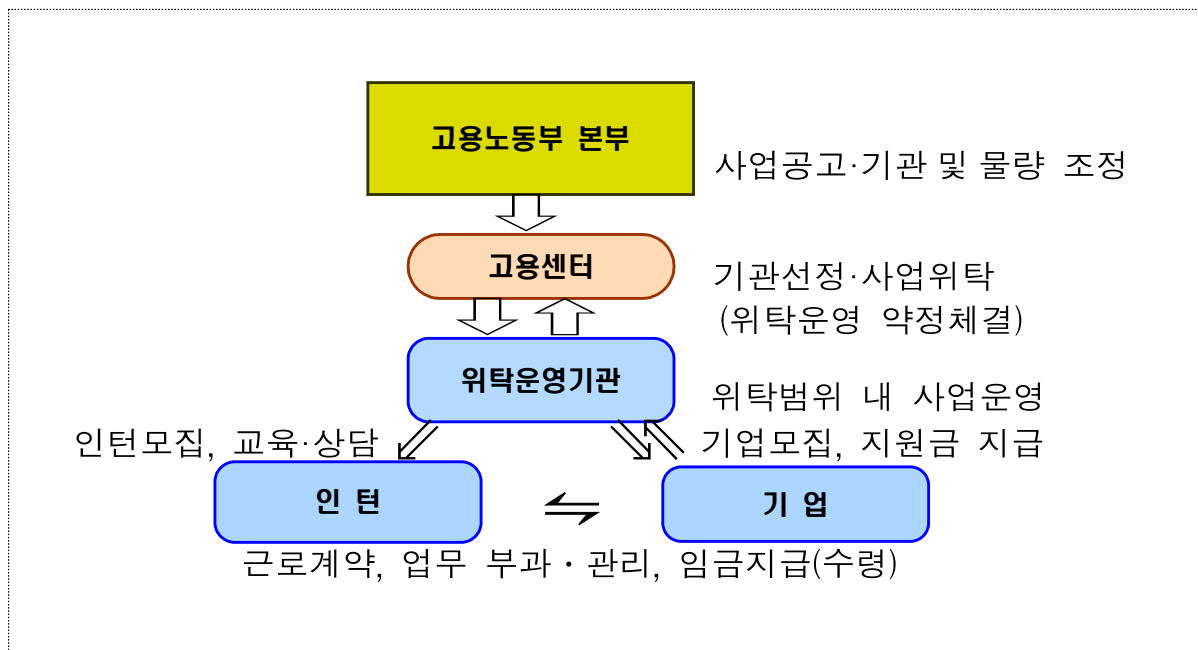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이하 “인턴제”라 함)라 함은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한다.
- “위탁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함)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심사 절차를 거쳐 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실시기업”이라 함은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선발하여 연수 및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 “인턴”이라 함은 실시기업과 「인턴 약정서」를 체결하여 인턴 기간 동안 사무·기술 등 실무를 습득하는 자를 말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사 명칭의 채용 또는 전형제도에 의한 인턴과 구분한다.

4. 추진체계

4-1. 개관

- 고용노동부 본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후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을 선정·사업운동을 위탁하고, 운영기관은 기업·인턴 모집·알선 등 사업을 시행하며,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사업 운영을 지도·관리한다.



4-2. 운영주체별 역할과 업무

○ 고용노동부 본부

- 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조정, 인턴교육훈련(별도 전문기관에 위탁)

○ 고용센터

- 운영기관의 신청접수(각 고용센터) 및 심의·선정(지방청고용센터)
- 운영기관별 실적을 감안한 배정인원 재조정
- 운영기관과 인턴제 위탁운영약정 체결
- 운영기관에 위탁사업비 및 인턴지원금 교부·정산·취소·반환 등
- 실시기업에 대한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
- 인턴에 대한 취업지원금 지급·반환
- 운영기관의 인턴 및 실시기업 적격대상 여부 확인 등 지원
- 운영기관과 실시기업에 대한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처분
-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 운영기관

-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실시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 인턴 참여업체 수요조사·발굴, 인턴희망자 모집
- 인턴 희망자와 기업의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 인턴 희망자 및 인턴 채용희망 기업 등에 대한 상담
- 인턴 희망자와 실시기업 간 인턴약정 체결 지원 및 인턴제 실시 지도·관리
-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지원금(조기정규직전환장려금 포함) 지급
- 실시기업에 인턴의 정규직 채용 권유·안내

○ 실시기업

- 운영기관 알선 등을 통해 청년인턴 채용
- 인턴 근로조건 등에 대한 인턴약정서(실시기업-인턴) 체결
- 멘토 지정, 유급휴가 직무훈련 등을 통한 인턴 능력개발

II | 운영기관 자격 및 위탁운영약정(고용센터-운영기관) 체결

1. 운영기관의 자격

1-1. (운영기관 신청자격) 운영기관의 신청자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 중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 기타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

1-2. (컨소시엄 구성 및 재 위탁)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일부 업무를 보조사업자에게 재 위탁하는 형태의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효율적 사업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사업공모·선정 및 인원배정

2-1. (운영기관 신청)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본부의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동안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서식 1) 및 사업계획서 등을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운영기관별 사업지역 및 신청접수) 각 운영기관의 사업지역은 원활한 인턴근무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그 산하 지방고용노동지청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 내로 하되, 서울·인천·경기도·강원도 소재 운영기관의 사업지역은 동 지역을 공동 사업지역으로 한다.

* 단, 인턴신청자를 타 운영기관 협약기업에 알선하는 경우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함

○ 전국 규모의 신청기관은 위의 사업지역 구분에 따라 소속 기관별로 그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2-3. (최저 위탁신청 인원) 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저 위탁신청 인원수는 150인으로 한다.

* 본부와 협의 후 사유가 적정한 경우 최저인원수 이하로 배정 가능

2-4.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운영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 고용노동청 고용센터는 신청자격·신청인원 수의 적정성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과 함께 상급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이하 “청 센터”라 함)에 신속히 제출한다.

2-5. (위탁인원 배정) 고용노동부 본부는 청년고용상황,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방고용노동청 단위로 위탁인원을 배정한다.

2-6. (운영기관 선정) 청 센터는 배정된 인턴인원의 범위 내에서 신청운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하여 운영기관 선정심사표(서식 2)에 따른 평가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7. (인턴운영기관 선정위원회) 각 청 센터는 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인원 재조정 심의 업무를 담당할 「인턴운영기관 선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 위원장은 당해 청 센터 소장이 되고, 6~10인으로 구성하되 고용관련 외부전문가 4인 내외를 참여시킬 수 있다.

○ 동 선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탁운영약정 체결 및 운영기관의 의무

3-1. (인턴제 위탁운영약정 체결 및 갱신) 고용센터 소장은 관할 운영기관과 표준 청년취업인턴제 위탁운영 약정서(서식 3, 3-1)를

준거로 「인턴제 위탁운영약정서」(이하 “위탁운영약정”이라 함)를 작성·체결한다.

- 센터는 기존 체결한 위탁운영약정을 갱신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갱신 체결할 수 있다.

3-2. (운영기관의 의무) 운영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탁운영약정을 준수하고, 인턴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이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센터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3. (전문성 제고 위한 전담자 교육이수) 운영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담당 직원에 대해 연1회 직업상담, 취업알선, 노동관계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반기 1회씩 청 고용센터에서 강좌개설 예정

3-4. (계약보증금 등)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계약 선금금(위탁비) 지급 시 계약보증금(계약금의 10%) 납입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여야 한다.(보증보험료는 운영기관 부담)

* 보증보험 가입기간: 2015.1.1.~ 2016.12.31.(2년)

4. 위탁운영약정의 해지

- 센터는 운영기관이 허위자료 제출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지침 및 약정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타 사업반납 등의 경우 위탁운영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위탁운영 약정 해지 기관은 해지일로부터 3년간 사업신청을 제한한다.

5. 기존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 재조정

5-1. (배정인원 재조정 신청) 운영기관 중 배정인원 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는 기관은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 위탁사업규모 변경신청서(서식 4)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센터는 인턴채용 진도율이 현저히 부진한 운영기관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할 수 있고,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때는 하반기 중 배정인원을 **축소신청**토록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위탁운영기관 선정 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 센터는 인턴 채용률(배정인원 대비 인턴채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고, 차기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배정 시 **우대**할 수 있다.

5-2. (배정인원 재조정)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센터는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다.

- 센터는 관내 위탁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재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 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청 센터는 관내 운영기관 간 물량을 재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자 회의를 거쳐 재배정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시행하는 **별도 지침**에 의거 운영기관의 배정인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그 지침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배정인원을 재조정한다.

III | 실시기업 및 인턴 참여자 자격

1. 실시기업 신청자격

1-1.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조업체인 대기업으로 고졸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한다.

※ 비영리법인·단체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참조
* 제조업(500명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 등(300명이하), 금융 및 보험업 등(200명 이하), 기타산업(100명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제조업(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80억원 이하) 등

○ “상시근로자”라 함은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일용근로내역은 제외)”로 한다.

* 수개의 운영기관과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운영기관의 인턴지원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1-1-1. 다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있다

- ① 벤처기업 지원업종(첨부 4)
- ② 지식기반서비스업(첨부 5)
- ③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첨부 6)
-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신고된 설치전문기업, 설비기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홈페이지 전문기업 리스트 참조)
- 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 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1-2. (제외대상) 아래 사업장은 인턴 실시대상에서 제외한다.

- ①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라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위생관리법 제2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복권발행업 등)

** 당해 파견업체내에서의 인턴근무는 가능

***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인턴채용불가

-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③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④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이전 또는 인턴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 인턴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인위적감원이라함은 고용보험 이직사유 구분코드 2(대분류,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①,②,③,⑤,⑥,⑨,⑪

- ⑤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신청 가능

- ⑥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⑧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⑨ 인턴근무 중 인위적 감원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2014년 이전 기업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 기업

- ⑩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 ⑪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 ⑫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청년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1-3. (실시기업의 참여제한) 아래 사업장은 인턴 실시대상에서 1년간 참여를 제한한다

- ① 최근 3년간('11.7.1~'14.6.30) 연속 참여하여 중도탈락률이 평균 40% 이상인 기업. 다만, 3년간 총 사용인턴수가 4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제외
- ② 최근 3년간('11~'13) 연속 참여하여 인턴참여자 기준 정규직 전환률이 3년 평균 30% 이하인 기업, 다만, 3년간 총 사용인턴수가 4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제외
- ③ 연간 2회 이상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는 사업장

1-4. (인턴참여 임금 조건) 인턴약정 체결시 당사자간 정한 약정 임금 수준이 월 128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

2. 인턴 참여자 자격

2-1. (대상)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가 신청할 수 있다.

- *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 인턴 신청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신고,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인턴신청일 당시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 후 참여 가능
- * 만 35~39세에 해당하는 자도 고용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턴참여 가능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령은 만39세로 정함

- 다만,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대학·대학원의 마지막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있다.

- 고교재학생(고교 졸업예정자를 말한다)은 청년인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학생신분으로 현장실습 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갖춘 일학습병행기업 및 체계적 현장훈련기업에 한해 청년인턴제 참여를 허용한다.

* 일학습병행기업 및 체계적 현장훈련기업 여부는 고용안정정보망에서 확인 가능

- 일학습병행기업 및 체계적 현장훈련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선정 취소 및 반납시에는 고교재학생(고교 졸업예정자를 말한다)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할 수 없다

2-2.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참여자격을 배제한다.

- ①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자의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

가.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졸업예정자, 대학 중퇴자 포함)이거나, 대학 휴학생 및 대학졸업예정자

나. 구직활동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청년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가구의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참여 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취약계층(결혼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FTA 피해 실직자, 여성가장 등)

- ②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 ③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중인 자, 다만 특례근무로 전환된 이후 계속 근무시 중도탈락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인턴 참여중 특례근무로 전환된 자는 전환된 날부터 참여자격 배제

- ④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회사 부적응 제외)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해 재 참여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능

⑥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⑦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⑧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중인 자

2-3. (특정 인턴참여자격 제한) 다음의 자는 특정 기업 및 직위의 인턴참여 자격이 제한된다.

① 당해기업에서 취업한 경우(단, 1개월 이내 일용직이나 단시간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

② 당해기업에서 병역특례로 근무한 경우

② 당해기업에서 현장연수(실습)나 교육훈련, 직장체험을 3개월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③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IV | 인턴 모집, 선발 및 협약체결(고용센터-운영기관)

1. 인턴신청자 및 실시기업의 모집

1-1. (사업 개시)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후 조속히 인턴신청자와 실시기업을 홍보 및 공고 절차를 거쳐 모집하는 등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1-2. (인턴 신청) 인턴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인턴신청서(서식 5)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동의자에 한함, 서식 6)를 작성하여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및 우편 등을 이용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의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웹사이트(www.work.go.kr/intern/)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적격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구 가능)

* 인턴신청일은 인터넷 접수일로 함

- 1-3. (인턴자격 심사 및 안내) 운영기관은 인턴신청자 및 신청기업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여 결격자는 배제하고, 결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센터에 적격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조회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적격 여부, 채용한도 준수여부, 중복채용 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인턴신청자 및 신청기업에 자격요건과 함께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4. (인턴의 사전교육 이수) 운영기관은 인턴 채용일 전 까지 인턴(선발 예정자 포함)이 사전 인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한다.(교육신청서 서식 14)
- 사전교육은 원칙적으로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교육장소가 원격지(대중교통 기준 왕복 4시간 이상소요)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고 집합교육의 과정개설이 인턴개시 보다 늦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턴 근무개시후 1개월 이내에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운영기관은 인턴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기업의 정부지원금 지급을 유보한다.
- 1-5. (기업의 인턴사업 교육 이수) 운영기관은 매분기 1회 이상 인턴 지원협약을 체결한 실시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동 시행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 등 실시기업 관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교육(집체교육, 현장교육 등)하여야 한다.
- 이때 운영기관은 실시기업 및 인턴 자격요건, 지원금 신청 절차, 지원금 환수사항, 부정수급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교육 참석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인턴지원협약(운영기관-실시기업)의 체결 및 해지

2-1. (인턴지원협약)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제출한 인턴채용 신청서와 인턴운영계획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적격여부 등을 심사한 후 당해 실시기업과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다.

- 운영기관은 인턴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 및 인턴참여 희망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기업에서 인턴신청서 인턴운영계획서(서식7,인턴채용신청서(기업용)첨부서류)를 제출받아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 인턴인원이 다수이고, 담당직무가 서로 다른 경우 별지로 작성가능

2-2. (협약내용) 「인턴지원협약서」는 표준 인턴지원협약서(서식 8)를 준거로 작성하되, 인턴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상 조치, 「인턴약정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협약 시 조건) 운영기관은 인턴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서류 보완 등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지할 수 있다.

2-4. (협약의 해지)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인턴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턴지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실시기업도 운영기관이 인턴지원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턴지원 협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한다.

3. 인턴 알선 및 채용

3-1. (상담) 운영기관은 인턴신청자에 대해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 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신청기업의 경우 필요인력의 학력·전공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3-2. (알선) 운영기관은 상담결과에 따라 인턴구직자 및 구인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턴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기업이 사업개시 6개월 이내인 경우 알선 이전에 실제 사업수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 요구가 있는 경우 채용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고, 인턴 신청자에게 당해 실시기업의 일반 정보 · 근무조건 · 인턴운영계획 등을 설명한다.
- 이때, 당해 운영기관내에 인턴신청자의 구직사항을 충족하는 기업이 없는 경우 다른 운영기관의 구인정보를 검색하여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알선장(서식 10)을 교부하고 면접 전까지 해당 기업에 알선자명단(서식 11)을 송부하여야 한다.

3-3. (취성패 참여자 연계지원) 청년인턴제 운영기관은 취성패 참여자 채용 희망기업 및 취성패 참여 청년 등을 별도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취성패 운영기관과 공유한다

- 취성패 운영기관은 청년인턴제 운영기관에서 발굴한 기업정보 등을 토대로 취성패 참여 청년의 여건에 맞는 기업에 직접 알선할 수 있다
- 취성패 참여자는 인턴 운영기관 또는 및 취성패 운영기관에서 직접알선을 허용한다

3-4. (실시기업의 직접 선발) 실시기업은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의 직접 선발 승인을 거친 경우에 한해 청년인턴을 직접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기업의 직접 선발은 연도별 채용인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보험자 10인 이하 사업장도 1인은 허용한다

< 직접 선발 요건 >

- ① 인턴신청일로부터 1주 이내에 운영기관의 취업알선을 1회 이상 받지 못한 경우
- ② 운영기관으로부터 2회(고용센터 주관 (인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참여시 1회 인정)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청년인턴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위 직접 선발요건을 충족한 실시기업이 인턴을 직접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기업 직접선발 승인신청서(서식 9)를 운영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센터는 실시기업의 직접 선발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직접선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실시기업에 통지한다.
- 실시기업이 직접선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인턴을 직접 채용한 경우 기업이 인턴채용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3-5. (우선 지원) 운영기관은 정규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계획 등을 확인하여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3-6. (본사와 지사의 구분선발) 실시기업의 인턴선발은 본사에서 일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실시기업 소재지 관할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본사와 지사 등으로 독립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름)에는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턴 선발한도는 사업단위(본사·지사 포함)로 판단하되, 개별 지사별 인턴 선발한도는 지사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히 전체 사업단위에 따른 선발한도가 적용된다.

3-7. (인턴채용의 확정 및 통보) 실시기업은 인턴이 확정되는 즉시 그 명단(서식 12)을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통보받은 사항을 중소기업 청년인턴 전산망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3-8. (인턴채용의 한도) 최초의 인턴지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실시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20% 이내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강소기업이거나 50인 미만 기업 중 당해년도에 정규직전환률이 80% 이상인 기업은 10% 한도내 추가채용을 허용한다.

- 채용한도를 초과한 인턴에 대해서는 기업이 인턴사용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타 부처 등에서 실시하는 인턴제(우리부 장년인턴제 등 포함) 등 기업인력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이 사업의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인턴 채용 한도 내(소수점 이하 절상)에서 잔여 인원에 한해 채용할 수 있다.

* 기 지원받은 경우는 당해 년도 지원받은 경우에 한함

3-9.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인턴으로 참여중인 자는 희망근로사업, 디딤돌 일자리사업,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턴제와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인턴지원을 중단하며, 향후 인턴참여 자격을 배제한다.
- 인턴참여 청년이 다른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서 인건비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을 지원 받을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하되, 인건비나 이에 준하는 비용지원이 아닌 단순히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3-10. (재해보험 가입) 인턴 교육훈련 실시기관은 인턴구직자의 사전교육 참여시 재해에 대비하여 적절한 재해보험에 가입 시켜야 한다.

3-11. (온라인 채용알선) 운영기관은 인턴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고용 안정정보망(work-net)에 구축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구인·구직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 운영기관은 우편 또는 방문신청 등의 경우에는 접수한 구인·구직 정보를 동 웹사이트에 신속히 입력하고, 변경사항은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인턴으로 취업하지 못한 자 및 인턴 채용을 하지 못한 기업의 구직·구인정보는 워크넷을 통해 운영기관 간 상호 공유한다.

1. 인턴약정(실시기업-인턴)의 체결

- 실시기업과 인턴은 채용결정 후 표준 인턴약정서(서식 13)를 준거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인턴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은 인턴약정 체결 후 인턴약정서 사본을 근로개시 전달까지 운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당해 운영기관에 인턴 신청한 자를 타 운영기관 협약 기업에 알선하여 채용된 경우 인턴약정(기업-인턴)일을 인턴지원협약일로 본다.(인턴지원협약는 생략하되 채용결과통보서 및 인턴약정서는 보관)

2. 인턴의 법적지위 및 보험적용

-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 실시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턴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3. 인턴 급여지급

- 3-1. (약정임금의 명시) 인턴의 약정임금은 인턴약정서에 임금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한다.
- 급여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상여금(분할지급 횟수 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후생복지 금품(식비, 교통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총액이 128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3-2. (급여의 선 지급) 실시기업은 정부지원금의 수령여부와 관계 없이 인턴약정서에 정한 날에 인턴에 대해 약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인턴 기간

- 4-1. (인턴 기간) 인턴기간은 3개월로 정하되, 약정체결 이후에도 기업 사정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단축할 수 있다.
- 4-2. (업무상 재해 인정)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인턴약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업무상 재해 및 부상으로 산재보험 처리되어 급여 수령시 지원금은 그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아니한다
 - 다만,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이 1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약정은 자동 해지된다.

5. 기타 근로조건

- 5-1. (근무시간) 인턴의 근무시간은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 형태로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당 35시간 미만으로 인턴약정을 할 수 없다.
- 5-2. (가산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5-3. (인턴약정의 효력 및 보충) 인턴약정(근로계약)은 근로관계 법령 및 당해 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인턴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노동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인턴의 교육, 배치 및 운영

- 6-1. (사전교육) 실시기업은 채용된 인턴에 대하여 기업 소개, 업무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턴제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6-2. (배치 및 근무상황 관리) 실시기업은 인턴의 전공 또는 희망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부서에 배치하여야 하고, 인턴의 출근부(서식 15)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6-3. **(전담자 및 멘토 지정)** 실시기업은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할 인턴사업 운영 전담자를 지정하고, 인턴의 원활한 업무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직원 가운데 교육·지도·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할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6-4. **(인턴의 근무지)** 실시기업은 인턴 채용시 근무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근무지는 채용한 사업장 소재지(법인정관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등)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명의상 및 실제 사업장소재지가 다른 경우 실제 경영 장소에 인턴을 근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턴운영계획서에 인턴근무지를 사전 명시하여야 한다
- 6-5. **(인턴의 직무교육 이수)** 실시기업은 청년인턴이 정규직전환 지원금 수령시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지)정하는 직무교육과정(2일 12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직무교육과정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주 환급과정 활용가능
- 6-6. **(유급휴가훈련 참가 허용)** 실시기업은 인턴이 근무시간 중 사업장 이외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2주 이내의 훈련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유급으로 훈련참가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주를 넘는 훈련참가 허용여부는 실시기업의 재량권을 인정하되, 직무 관련성이 높은 훈련은 가급적 허용하여야 한다.
- 6-7.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중복신청 금지)** 실시기업은 인턴에 대한 일정기간 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기간에 대한 인턴지원금을 신청·수령해서는 아니된다.
- 실시기업으로부터 인턴에 대한 유급휴가훈련 실시 사실을 통보받은 운영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을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등으로 지급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어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야 함에도 인턴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은 경우 인턴지원금은 환수하며, 인턴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참고】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유급휴가훈련제도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근거)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인턴 포함)에게 7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30시간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30일,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이외에 **임금**을 일정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

* 임금지원 한도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7.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7-1. (인위적 감원시 제재) 실시기업이 이 사업의 정부지원금(인턴 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인턴 포함)를 정리하고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감원인원수 만큼 그 때부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며, 감원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일)로부터 1년간 인턴 추가채용을 금지한다.

※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하여 ‘감원방지기간 미준수사업장’을 조회

7-2. (지급중단 대상) 인위적 감원에 따른 지원중단 조치는 감원 직전 채용된 인턴을 대상으로 하며, 감원 직전 채용된 인턴이 2인 이상인 경우 임금이 높은 인턴에 대한 협약을 해지한다. (단, 감원일 이후 및 지원중단 조치 이전 퇴직한 인턴이 있는 경우 동 인턴을 지급중단 대상으로 봄)

8. 중도해지자 관리

8-1. (중도해지의 제한) 실시기업이 인턴약정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8-2. (중도 해지자의 실시기업 변경 등) 중도해지자는 1회에 한해 재참여를 허용하되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 인턴근무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된 경우 운영기관에 실시기업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인턴 기간이 14일(휴일포함) 이내에 중도해지된 경우 새로이 시작하고, 14일을 초과된 경우 잔여기간만 인정한다.
- 인턴근무개시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한 경우 인턴약정 해지의 정당한 사유(정리해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약정위반, 회사 부적응,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참여를 허용하되 그 잔여기간 내에서만 인정한다. 다만, 기업의 도산, 사업폐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된 경우에는 인턴근무기간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다시 참여할 수 있다.

8-3. (중도해지자 통보 및 지원금 계산) 실시기업은 인턴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인턴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중도 해지자에 대한 기업 인턴지원금의 지급은 인턴의 실근무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VI | 정규직 전환

1. 정규직 전환 노력

-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은 인턴 참여자가 직무능력 개발 및 직장 적응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규직 전환기한 및 지원금 지급조건

- 실시기업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인턴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인턴에게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3.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실시기업은 인턴의 정규직 전환시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17)를 준거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이 때 정규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의미한다.
-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사업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을 계약하는 경우는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본다.

4. 정규직 전환 통보

- 실시기업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서식 16)을 실시기업 소재지 관할 센터 및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우수기업 인턴 추가지원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강소기업이거나 50인 미만 기업 중 2015년에 채용한 청년인턴(중도탈락자 포함) 중 정규직 전환자의 비율이 80% 이상인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의 10%만큼(소수점 이하는 절상) 추가 채용할 수 있다.

Ⅶ | 정부 지원금 지급

1. 인턴기간 중 기업지원금

1-1. (지원 수준)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인턴약정서 상에 정한 약정 임금이 일정한 기준인 128만원 이상인 경우, 약정기간(3개월 이내) 동안 월 60만원의 임금을 지원한다.

- 인턴기간중 (유)무급휴직, 유급휴가, 쟁의행위, 결근 등의 사유로 약정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기업 자체 인건비 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적으로 소정의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1-2. (지원한도)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월 60만원을 지원한다.(3월간 180만원 한도)

1-3. (지원제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체납 납부 완료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2. 운영기관의 인턴기간에 대한 지원금 지급절차

2-1. (신청) 실시기업은 인턴근무자에 대한 매월 급여지급 후 10일 이내에 인턴약정서(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입금통장(입금증)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서식 18)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금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턴협약서, 입금증 등)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의 지원금 신청내역을 검토 후 10일 이내에(매월 2회 이상) 인턴지원금 신청서(서식 18-1)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고용센터는 10일 이내에 교부결정(서식 18-2)*후 운영기관에 통지한다.

[인턴전산시스템(<http://www.work.go.kr:8085>)을 통해 신청]

* 교부신청시 확인사항(운영기관): 신청대상(인턴, 기업)의 적격 및 인위적 감원, 선발절차 준수여부

2-2. (인턴참여 확인)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서 접수시 인턴참여자가 2인 이내인 경우 전원, 3인 이상인 경우 50%이상의 참여자에게 실제 참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2. (지급시기 및 방법)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인턴 지원금을 교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지원금을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2-3. (지급 제한) 실시기업이 당해 인턴을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 전에 회사사정으로 인턴약정을 해지하는 경우(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22~26-②,③)에는 추후 1년간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3. 정규직 전환시 기업지원금

3-1. (지원수준) 인턴채용기업이 인턴기간 종료이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 병역특례 전환시에는 전환이전까지 일할 계산

3-2. (지원제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체납 납부 완료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3-3. (지원 조건) 실시기업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인턴계약기간 종료일 까지 정규직 채용여부 결정하고 인턴기간에 연속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3-4. (인턴기간 단축 특례: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을 단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인턴잔여기간에 지원되었을 정부지원금 전액을 조기 정규직전환 장려금으로 지급하되,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기 정규직전환 장려금은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일에 지급한다.

4. 고용센터의 정규직 전환 후 지원금 지급절차

4-1. (신청) 실시기업은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임금을 매월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고 정규직전환일로부터 최종 6월분 임금을 지급한 날부터 2월 이내 인턴협약서(근로계약서)·임금예금통장(입금증)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서식 19)를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 도중 근로자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신청할 수 있다.

* 증빙자료는 재직중이고 임금지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

4-2. (지급방식)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지원금 신청서에 따른 정규직 전환자의 고용유지상황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4-3. (지급조건) 실시기업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동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다만, 위 기간(6개월) 중이라도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고용보험 상실사유코드 11~12, 26-①)의 경우 지원금은 출근기간(임금산정기간을 기준으로함)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위 기간(6개월)중 당해 근로자가 회사사정에 따라 이직(고용보험 상실사유코드 22~26-②,③)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례1> 임금이 월 200만원, 1.1 정규직 전환후 3.15까지 근무후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1,614,510원(1월 65만원+2월 65만원+3월 314,510원(65만원*15일/31일))

사례2> 임금이 월 200만원, 1.1 정규직 전환후 7.15까지 근무후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390만원(65만원*6월)

- 정규직 전환후 (유)무급휴직, 유급휴가, 쟁의행위, 결근 등의 사유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 임금이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기업 자체 인건비 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사례1> 임금이 월 200만원, 1.1 정규직 전환후 3.1~3.15까지 무급휴직하고 3.16~3.31까지의 임금을 100만원 수령한 경우 3월의 지원금은 325,000원 (65만원*1백만원/2백만원, 원단위 절사)

사례2> 임금이 월 200만원, 1.1 정규직 전환후 3.1~3.31까지 유급휴직하고 고용 유지지원금으로 80만원을 지원받고 사용자가 40만원을 부담한 경우 3월의 지원금은 130,000원(65만원*40만원/2백만원, 원단위 절사)

사례3> 임금이 월 200만원, 1.1 정규직 전환후 3.1 업무상재해를 당해 3.1~3.31 까지 요양보상을 받은 경우 3월의 지원금은 0원(사용자 직접부담금 없음)

5. 취업지원금 지급

5-1. (제도 개요)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인턴참여자가 제조업 생산현장에서 생산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는 자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업무와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1인당 18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한다.(대기업은 제외)

5-2. (지급 방식) 취업지원금은 제조업 생산직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정규직전환 1개월 후 20%(60만원), 정규직전환 6개월 후 30%(90만원), 정규직전환 12개월 후 50%(150만원)를 지급하고, 그 외 직종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정규직전환 1개월 후 20%(36만원), 정규직전환 6개월 후 30%(54만원), 정규직전환 12개월 후 50%(90만원)를 지급한다.(단, 조기 정규직전환자가 당초 약정인턴기간내 퇴직한 경우에는 취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3. (신청 절차) 취업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인턴 취업자는 취업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20)와 함께 다음서류를 인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 등 재직증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제조생산직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4. (지급요건 확인 및 지급) 고용센터는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통해 적정한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2회차 지원신청의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이외의 관계서류는 기존 제출받은 서류에 변동이 없는 한 기존 서류로 같음할 수 있다.

※ 제조업체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구분하되, 고용보험전산망 업종분류(제조업은 10~33으로 시작)로 확인

※ 생산현장 여부는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장등록증으로 확인(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제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생산시설 및 작업현장 사진 등 첨부)

※ 생산현장 취업자인지 여부는 담당업무 또는 근무부서가 표기된 재직증명서를 통해 확인

5-5. (제도 안내) 운영기관은 제조업체 생산직, 그 외 직종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턴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금제도를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

5-6. (부정수급 방지) 인턴사업 참여자가 취업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 당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급 일로부터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

- 실시기업이 재직증명서 허위기재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을 근로자와 연대하여 반환토록 한다.
- 운영기관은 취업지원금 지급신청 접수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예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운영기관에 대한 위탁운영비의 지급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턴 1인당 기본운영비 25만원의 위탁운영비를 연 2회(상·하반기)에 걸쳐 운영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강소기업 알선여부, 정규직 전환여부, 장기근속(6개월 이상) 여부 등 성과(각 5만원)에 따라 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 성과급 실적(5월말, 10월말)을 산정하고, 7월, 12월에 지급하고, 미지급분은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 위탁운영비 산출을 위한 인턴 채용기준은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인턴을 채용한 실시기업 관할 운영기관에 지급하되 인턴신청자를 타 운영기관 협약기업에 알선하여 채용한 경우에도 알선 채용한 운영기관에 지급한다.
- 위탁운영비는 인턴의 중도포기 시 실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인턴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취업한 경우에는 당초 약정한 인턴 기간을 수료한 것으로 간주한다.(조기 취업후 당초 약정기간내 퇴직시 최종근무일까지 일할계산)

7.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 지급

- 교육훈련기관은 인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턴 1인당 1일 1만원(교통비, 식비)를 인턴에게 은행계좌 등으로 선지급한다.
- 교육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전 분기 인턴교육실적, 수료자명단 및 출석부(서식 22)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훈련비(서식 21)를 청구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인턴사전교육수료자 명단 등 사실확인후 교육훈련비를 지급한다.

1.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 교부

- 1-1. (인턴지원금 교부방법) 운영기관에 대한 인턴지원금은 신청분의 경우 後지급형태로 지급한다. 단, 실시기업의 '15년 11월 급여 지급분은 '16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 1-2. (위탁운영비) 위탁운영비는 운영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건비, 섭외활동비(여비, 업무 추진비 등), 수용비(통신 및 공공요금, 홍보비, 사무 용품비), 사업수행을 위한 자산취득(컴퓨터 등), 보증보험료, 송금수수료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 1-3. (지급방법) 센터는 지원금을 운영기관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2. 지원금 관리

- 2-1. (적용 법률) 정부의 지원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 2-2. (관리 방법) 운영기관은 은행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정부지원금을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위 법률과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장부 등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운영 기관은 정부지원금을 인턴제 사업연도에 따라 구분하고, 인턴지원금과 위탁 운영비를 각각 별도의 은행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 2-3. (관계서류의 보존) 운영기관은 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지급 대장,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부정지출 · 수급 방지

3-1. 부정수급 개념

- “부정수급”이라함은 기업 또는 인턴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약정을 체결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신청, 지급받은 행위 일체를 말한다.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벌칙규정 >

- 제40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제41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

3-2. 부정수급 판단기준

- (실시기업)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기존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인턴으로 다시 채용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인턴으로 등재하거나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 신청(수령), 채용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피보험자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실시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 (인턴)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취업지원금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을 말한다. 다만, 인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3-3. 부정수급 조사

- 고용센터는 인턴전산시스템의 부정수급 예방관리정보를 활용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고용센터의 부정수급 조사 시 사전고지를 원칙적으로 하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은 관계공무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만약,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이 관계공무원의 부정수급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지원 중단 및 추가 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지원금 부당·부정행위 조사 및 회수 관할>

○ 원 칙

- 정부지원금 부당·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은 지원금을 지급한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
 - *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 관할이 다른 경우('10년까지) 사업비 정산 완료 이후 확인된 경우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 관할로 일원화
- 다만, 관할 외 고용센터가 현장점검 및 제보 등으로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의 부당·부정행위를 조사하게 된 경우 사실 조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처분은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
 - * 정산완료일 이후 '10년 이전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등도 동 기준을 적용

○ 예 외: 운영기관 이전으로 관할 고용센터 변경시

- 사업비 정산완료 이전인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사업비 정산완료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전 관할 고용센터

3-4.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 실시기업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신청하거나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센터의 반환명령에 응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종전('14년 지침)에는 부정수급 확인시 반환명령 및 3년간 참여제한 처분을 하였으나 이 지침부터는 p9의 실시기업 제외대상 ⑨항에 규정하여 3년간 참여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

※이 지침 시행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 이 지침 시행 후 확인될 경우 반환명령 등 그 처분은 개정지침에 따른다.

- 부정신청 또는 수급에 따라 채용된 인턴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반납·환수한다.

4. 위탁운영비 및 기업지원금의 반납·상계

- 4-1. (운영기관의 반납의무) 운영기관은 교부받은 위탁운영비 및 지원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 지침 및 인턴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실시기업의 정부지원금 반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운영기관이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단시점 이후 집행 잔액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 4-2. (실시기업의 반납의무) 실시기업은 이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당·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4-3. (위탁운영비 등의 상계)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이 위탁운영비나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예정인 위탁운영비 및 기업지원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한다.

5. 반환금 환수절차

- (의견청취) 고용센터장은 해당 운영기관으로부터 환수사유 및 그간의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반환명령 이전까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의견청취
- 다만, 환수대상이 운영기관인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당해 운영기관으로부터 의견청취
- (반환명령) 고용센터장은 반환대상 기업 또는 운영기관에 대해 반환사유, 반환액 등을 명시하고 반환명령 통지
-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받은 경우에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
*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 압류 등 채권확보,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 채권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

- **(반환금액의 분할납부)** 납부기한은 징수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되 기업의 경영사정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의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6월 범위 내에서 분납가능
- **(형사고발)**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의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수금액, 반납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징수 이외 형사고발 등을 고려
 - * 운영기관 및 연수시행자(인턴포함)가 공모한 경우, 부정수급한 금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정행위 유형 및 반납의사 등을 고려하여 형사고발 한다

6. 지원금 정산

- 6-1. **(사업비 정산 보고)** 운영기관은 당해연도 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인턴지원협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지 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기 지원중인 인턴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업무는 타 운영기관에 위탁하거나 당해 센터에서 직접 담당한다.
- 6-2. **(센터의 정산실시)** 센터는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객관적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 확인을 거쳐 정산을 실시한다.
 - 기업에 대한 지원금(민간경상보조비)은 운영기관에서 실시기업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다.
 - 위탁운영비는 당해 운영기관을 통해 채용된 인턴의 실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 6-3. **(사업비 반납 및 추가 지급)** 운영기관은 정산결과 기업지원금 및 위탁운영비가 과 지급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하며, 부족액은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 센터는 정산결과 부정·유용 등 사업 목적에 반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서류관리 및 보존

- 1-1. 운영기관은 인턴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인턴 인적사항, 실시기업 현황, 중도포기, 정규직 전환, 위탁운영비 및 기업지원금 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2. 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실적보고: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전산망을 통해 집계

3. 지도·점검

- 3-1. (운영기관의 현장지도) 운영기관은 인턴제가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턴근무 상황, 지원금 신청요령, 부정수급 예방, 인턴의 근로조건 보호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기업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지도점검시 임금체불 등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개선지도과에 통보

- 현장 확인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기업의 50% 이상 현장지도를 실시하되 신규 실시기업 및 18세 미만의 자의 실시기업, 유해·위험작업장,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다수고용 사업장 등을 전체의 50%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2. (센터의 현장점검) 센터는 관할 운영기관과 실시기업, 교육훈련기관이 인턴제를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분기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점검표 서식 27, 28)

- 센터는 관내 운영기관, 교육훈련기관에 대해 매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

을 고려하여 업종·규모별 점검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단독 또는 합동(운영기관)으로 실시한다.

- 점검대상 기업은 인턴전산시스템의 부정수급 예방관리정보에 등록된 기업, 부정수급 제보업체, 기타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1년 간 인턴 전담자 1인당 10개소 이상)하여야 한다.
- 센터는 실시기업 지도·점검에 있어 해당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지도·점검 시 동행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3. (실시기업의 협조의무) 센터 또는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4. (운영기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센터는 운영기관이 지침,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의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첨부 2)에 따른 제재를 하여야 한다.

-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조치와 함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며, 시정요구 불이행 시 경고조치와 함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정 해지 시 다음년도 인턴사업 재참여를 제한한다.
- 동일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거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주의를 거치지 않고 경고 또는 약정해지 조치를 할 수 있다.

3-5. (실시기업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센터 및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지침,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첨부 2)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인턴 신규채용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인턴 경력 증명서 발급

- 인턴 참여자는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 근무를 마친 경우 실시기업 관할 센터에 인턴 경력 증명서(서식 26)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센터는 인턴 수료사실 확인을 거쳐 발급하여야 한다.

5. 사업 성과관리

5-1. (운영기관 평가지표) 센터는 10월 31일 실적(워크넷 실적 입력 마감일)을 기준으로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80점)와 업무협조 등 정성평가(20점), 가점(5점)을 병행하여 운영기관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연도 사업참여시 워크넷 입력 오류 상위기관 5%(소수점 이하 절하)에 대해서는 배정인원 10%내에서 감하여 조정한다

- (정량평가) 센터는 운영기관별 인턴취업, 고졸 이하 미취업자 취업, 정규직 전환율, 중도 탈락률, 강소기업 등 취업, 인턴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 등 5개 기준에 따라 각 운영기관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한다.

- ▲ 인턴 채용율(15점): 최초 목표대비 인턴 채용율을 반영한 인턴취업자 수 실적을 지표로 선정
- ▲ 고졸 이하 미취업자 채용율(10점): 고졸 이하 미취업자 인턴 채용율(배정인원의 50%를 기준으로 함), 목표물량 변동상황을 반영한 고졸 이하 미취업자 인턴 취업자 수 실적을 지표로 선정
- ▲ 정규직 전환율(20점): 정규직 전환율이 실질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반영하는 평가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포함
- ▲ 중도탈락률(20점): 인턴참여자의 직무 적응도 및 수료 등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인 점을 감안하여 포함
- ▲ 강소기업 등 알선취업실적(15점): 매년 10월말 기준으로 운영기관에서 강소기업 및 일학습병행제기업에 인턴을 알선하여 취업시킨 실적

▲ 인턴참여자 만족도(5점): 인턴수료자의 인턴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가점)

○ (정성평가) 센터는 운영기관별 센터와의 업무협조 관계, 지침 및 지도감독 이행, 정부지원금 관리의 투명성, 인턴 및 사업장 지도감독 노력 등 4개 기준에 따라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 업무협조 관계(5점) : 인턴 배정인원 조정, 인턴 운영상황 통계파악, 사업홍보, DB입력, 인턴교육훈련사업 안내 등 업무협조의 유기성

▲ 지침 및 지도감독 이행(5점) : 지침 및 Q&A 준수실태, 지도감독 이행상황, 부당운영에 대한 지적 및 징계조치 상황 등

▲ 정부지원금 관리의 투명성(5점) : 정부지원금 회계처리 적정성, 지출증빙서류 보존 및 관리, 부당 예산집행 사례 등

▲ 인턴 및 사업장 지도감독(5점) : 인턴운영실태 현장점검, 부정수급 차단 및 예방노력 등

5-2. (실적평가에 따른 조치) 고용노동부 본부 및 센터는 우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운영기관 선정 및 인턴실시인원 배정, 정부포상 수여, 성과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실적이 부진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 참여자격을 제한하거나, 인턴인원 배정에 있어 불이익을 부과한다.

6.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센터는 인턴 중도 포기자나 정규직 미 전환자에 대하여 취업상담, 채용정보 제공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용노동부 본부는 인턴 중도 포기자나 정규직 미 전환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별도의 교육훈련 전문기관을 통해 취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센터 및 운영기관은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7. 전산망 구축 · 입력

- 7-1. (전산망 구축)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안정정보망에 별도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 7-2. (전산 입력) 운영기관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채용 및 예산집행 등의 실적관리가 온라인을 통해 신속히 이루어짐으로써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발 등 추진실적을 7일 이내에 신속히 고용안정정보망 내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X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이 지침은 2015. 01. 20.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인턴연수 중인 자(수료자 포함)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첨부 1>

중소기업과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해 당 업 종	중소기업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광업·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기타 이외의 산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포함됨

<첨부 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운영기관의 위반행위

- ① 이 지침 및 보조금법 등을 위반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 위반행위별로 최초 위반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 (미이행시 경고)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재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약정 해지할 수 있음
- ②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 ③ 위반행위로 인한 약정해지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구 분	위 반 행 위	조 치 기 준
실시기업 및 인턴	○ 인턴 및 실시기업 부적격 선정	○ (1차)경고→(2차)약정해지
	○ 관할 외 인턴협약 체결	○ (1차)주의→(2차)경고
	○ 개인정보 사적이용	○ (1차)경고→(2차)약정해지
정부지원금 관리	○ 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사용	○ 약정해지
	○ 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 (1차)경고→(2차)약정해지 ※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 지원금 착오지급	○ (1차)주의→(2차)경고
	○ 사업비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회계장부 증빙 서류 미비치 및 관리부실 등	○ (1차)경고→(2차)약정해지
기타	○ 운영기관 고의 또는 과실로 실시기업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 (1차)경고→(2차)약정해지
	○ 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 (1차)경고→(2차)약정해지
	○ 현장확인 활동 미준수	○ (1차)주의→(2차)경고
	○ 전산입력 미실시 및 실적 관리 미흡	○ (1차)주의→(2차)경고
	○ 기타 지침 및 인턴위탁운 영 약정 위반	○ (1차)주의→(2차)경고

□ 실시기업의 위반행위

- ①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 인턴약정 등을 위반 시 일
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 위반행위별로 최초 위반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
(미이행시 경고)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재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약정 해지할 수 있음
- ②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 ③ 위반행위로 인한 협약해지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구 분	위 반 행 위	조 치 기 준
인위적 감원	○ 인턴지원 후 기존직원을 부당하게 감원	○ 감원 인원수 만큼 지원중단 ○ 1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지원금 부정 수급	○ 기존직원 인턴 채용 ○ 인턴 지원자,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 ○ 인턴신청 및 지원금 서 류 허위제출 등	○ 인턴지원 협약 해지 ○ 부정 수금액 환수 및 지원중단 ○ 3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채용한도	○ 채용한도 위반시	○ 초과자 환수
인턴관리	○ 사전교육 미이수	○ (1차)주의 및 지원금 유예→(2차)경고 및 지원금 유예
	○ 인턴약정 위반	○ (1차)경고→(2차)약정해지
	○ 인턴교육 및 기타 인턴관리 부적정	○ (1차)주의→(2차)경고
기타	○ 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 (1차)주의→(2차)경고
	○ 기타 이 지침, 인턴지원협약 등 위반	○ (1차)경고→(2차)약정해지
	○ 기타 센터 및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 (1차)경고→(2차)약정해지

<첨부 3>

운영기관 평가기준

□ 평가방법

구 분	배점	기 준	비 고
정량평가 (업무실적)	80점	인턴전산시스템 입력정보 기준(10월말 실적)	본 부
정성평가	20점	지침 참조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
가점(만족도 평가)	5점	-	인턴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 평가기준

구 분	세부 평가기준						
정량 평가 (80점)	인턴채용율 (15점)	○ 목표 100% 달성 15점, 목표미달성 : (달성률/100%)*15점 * 2015년 당초 목표인원 기준					
	고졸이하 채용율(10점)	○ 목표달성 50% : 10점, 목표미달성 (달성률/50%)*10점					
	정규직 전환율(20점)	○기준 : 10.31 수료자+중도탈락자(진행자 제외) - 금년 목표 : 85% 이상시 20점, - 금년 목표 85% 미만 : (달성률/85%)*20점					
	중도탈락률 (20점)	탈락율	10%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40%미만	40%이상
	점 수	20	16	12	8	5	
	강소기업 등 취업(15점)	○ 목표 30% 달성 15점, 목표미달성 : (달성률/30%)*15점					
정성 평가 (20점)	업무협조관계(5점), 지침 및 지도감독이행(5점), 정부지원금관리(5점), 인턴 및 사업장지도점검(5점)						
가점	만족도(5점)	○ Work-net 인턴 만족도 조사 결과 값(1~5점) - 운영기관별 참여인원의 40% 이상 참여기준 - 40% 미달시: (결과값)*응답인원/실시인원(40%인원)					

벤처지원업종

업종(산업분류코드)	연구개발투자비율
제조업(15 ~ 37)	
- 의약품(242)	6%이상
-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7%이상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30)	6%이상
- 전기기계(31)	6%이상
- 반도체 및 전자부품(321)	6%이상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33)	8%이상
- 기타제조업	5%이상
도매 및 소매업(50 ~ 52)	6%이상
통신업(64)	7%이상
사업서비스업	
-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용관련업(72) (인터넷산업)	10%이상 (5%이상)
기타산업	5%이상

지식서비스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1	뉴스제공업
63991	DB 및 온라인 정보제공
70	연구개발업
7131	광고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8565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구 분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출판·인쇄	18111	경 인쇄업
	18112	스크린 인쇄업
	18119	기타 인쇄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18122	제책업
	181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9	기타 서적 출판업
	58121	신문 발행업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3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공연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 공연단체
	90131	공연 예술가
	90132	비공연 예술가
	90191	공연 기획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게 임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 및 애니메이션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방송·광고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 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작성업
	71399	그외 기타 광고업
캐 리 커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